

의안번호	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7.
추계번호	25C3210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2항제1호 (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)	-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·<u>검사비</u>·<u>약제비</u>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제2항제1호 (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·약제비 지원(안 제11조제2항제1호)

- 현행 난임극복 지원사업은 체외(신선, 동결)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의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시술비, 약제 2종(자궁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)¹⁾을 지원하는 것으로,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²⁾되어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상이함

1) 급여약제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(예: 페마라정, 레트로졸 등), 비급여약제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)에서 검색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(예: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,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,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,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, 루티너스 질정, 유트로게스탄 질정, 예나트론 질정, 크리논 겔, 사이클로제스트, 프롤루텍스주 등 / 듀파스톤 지원 불가) (출처: 강동구 보건소 홈페이지(방문일:2025.7.10.))

2)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20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이양 전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지원하되, 재정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

-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」 지침에 따르면 연령과 소득 구분 없이 시술비(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시술비) 및 약제2종에 한하여 체외수정(신선)은 최대 110만원까지, 체외수정(동결)은 최대 50만원,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체외수정은 출산당 20회까지, 인공수정은 출산당 5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
- 경상남도,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주요 지방자치단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현황(2025년 기준)

지역	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
경상남도	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	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	부부합산 최대 20만원
전라북도	난임 진단검사비 지원	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	부부합산 최대 30만원
전라남도 광양시	난임 진단검사비 지원	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	부부합산 최대 20만원
전라남도 목포시	난임진단검진비 지원	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	부부합산 최대 30만원
전라남도 순천시	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	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	부부합산 최대 20만원
전라남도 화순군	난임부부지원사업	화순군 거주 난임부부	부부합산 최대 50만원

자료: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(bokjiro.go.kr)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와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난임진단 검사비와 난임치료약제가 필요한 대상자 수,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지원 규모를 알 수 없음
 - 참고로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난임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남성 73,578명, 여성 91,266명 등 총 164,844명이고,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5,553억원(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제외)임
 - 난임진료에 따른 진찰료, 투약료 및 검사료 등은 '[참고자료] 2024년 난임 진료 및 난임 시술 현황'

- 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2024년 난임 진료 및 난임 시술 현황

[참고표 1] 2024년 난임진료 현황(성별, 입원/외래별)
(단위: 명, 백만원)

성별	입원/외래 구분	환자 수	요양급여비용총액
남성	입원	128	162
	외래	73,494	19,643
	소계	73,578	19,806
여성	입원	482	872
	외래	91,265	534,641
	소계	91,266	535,514
합계		164,844	555,320

주: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비급여 및 100% 본인부담금 제외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[참고표 2] 2024년 명세서 항별 난임진료 금액
(단위: 명, 백만원)

항구분	항설명	금액
1항	진찰료	17,054
2항	입원료	237
3항	투약료	109
4항	주사료	92,054
5항	마취료	17,172
8항	처치 및 수술료	340,157
9항	검사료	58,711
10항	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	331

주 1) 명세서 항별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 F021(「건강보험법시행령」 별표2 제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) 기재된 명세서 대상(약국 제외)
2) 투약료의 경우 원내처방에 한함
3) 6,7항(이학요법료, 정신요법료) 및 A, B, D, E, SS, U항(본인부담금액 및 특수장비료)은 제외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[참고표 3] 2024년 난임 시술 구분별 수가 금액 현황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환자 수	금액
정자채취 및 처리	73,256	18,334
난자채취 및 처리	66,052	130,290
수정 및 확인	64,756	65,791
해동	49,412	27,200
배아 배양 및 관찰	71,358	36,845
배아 이식	65,935	79,856
자궁강내 정자주입	20,412	6,652

주 난임시술 수가코드가 청구된 명세서 대상 행위별 수가 금액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